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2025. 1.



●●●● 일러투기 ●●●●●

- 본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설명서』는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2025년 중도정산에 활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2025년 1, 2월 나이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전국 교육청, 산하기관 및 11,000여개 각급 학교의 77만 교직원의 급여 업무 처리에 활용됩니다.
- 교육청 및 학교 급여 담당자는 본 설명서 전체를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대상자(교직원)는
 설명서 Ⅱ-5(41~57page)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이후 <u>1월 15일(예정)</u>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도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 종전 (현)근무지자료등록 작업 기능은 현재도 가능)
- 본 설명서의 내용은 <u>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사용자설명서] 게시판</u>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계속 갱신됩니다.
- 연말정산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u>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로 등록</u> 해주시거나,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١.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요	1
1.	.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1
2	.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6
.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17
1.	.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17
	. 연말정산 기준 확인	19
3.	. 연말정산 대상자 및 자료생성	21
4.	. 연말정산 생성 자료 확인	24
5.	.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41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44
6.	. 개인별공제자료 확인 및 검토	58
7.	. 연말정산 처리	65
.	참고사항	74
1.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74
2.	. 서식 변경사항	81
3.	.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88

I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 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출산·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 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젉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좆

0 1								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상향 및 경	석용대상 확	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잘와기가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						○ 기준시기 □ 주택가액]전 범위 확대
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으로 연장하는 경우					○ 5억원 억	이하 → 6억	원 이하		
<추 가>								주시 기존 장기 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1명인 경우: 15만원 - 2명인 경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추 가>	- 손자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좌 동)
<신 설>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 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1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②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좌 동)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 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 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출산·보육부담 완화

~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좌 동)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 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사후관리 방식 변경
 (추장)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징수* *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장수했어야 할 세액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
을 추정	세(15%) 부과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좌 동)
 ○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①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②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 등과 구「국세기법 기계되었다. 	○ (좌 동) ② 위탁자 등*이 ①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본법 시행령」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위탁자 + 위탁자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 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 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경
□ 특례기부금의 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1 + 2)	○ (좌 동)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②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1 5만원 → 8만원-(좌 동)2 (좌 동)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 비는 제외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 (좌 동)		
<추 가>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 (좌 동)		
<신 설>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 ×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좌 동)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_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 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좌 동)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기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1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가입 2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편에 납입 3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준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23.12.31.	○ 2024.12.31.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계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좌 동)
<신 설>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적용기한 연장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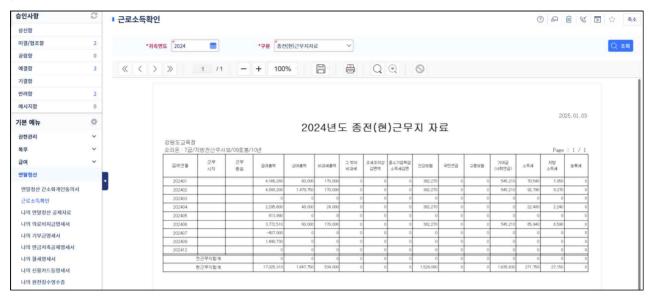
2024년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내 용	예시	비고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41,000,000	자동산정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월20만원 이내,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연장근로, 식비(월 20만원 이하),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 보육수당 (월20만원 이내), 육이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 1,00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신용키드공제 적용 시 활용	40,000,000	자동산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1,250,000	자동산정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 한도 적용 기준	28,750,000	자동산정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50, 추가공제(경로100, 장애인200, 부녀자50, 한부모100)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공적), 주택자금(원리금,이자),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 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자임금식감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4,750,000	<u>※</u> <u>나이스</u> 등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000,000	자동산정
(X)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울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자동산정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520,000	자동산정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70%(청년 90%)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초과30%(74/66/20 한도) ○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자는 15%)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일반-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15%(100만원 추가 한도) - 의료비(총급여액의3% 초과액): 일반15%, 난임시술바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야20% - 교육비: 15% / 기부금: 정치자금, 특례, 우리사주, 일반(종교), 일반(종교 외) ○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미신청시) ○ 납세조합공제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95~97년),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 17%(55백만원이하), 15%(8천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1,000만원 한도 	1,400,000	<u>※</u> <u>나이스</u> 등록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120,000	자동산정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1,970,000	자동산정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850,000	자동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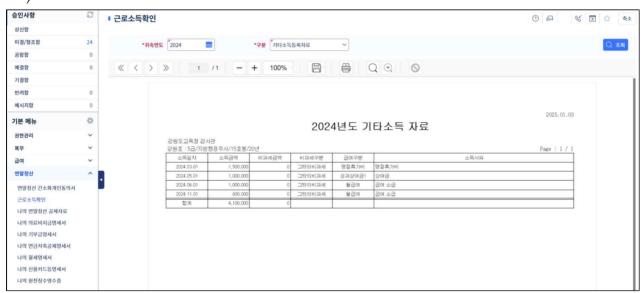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1. 근로소득 확인

5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 2)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한 경우, 2024년도 소득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3) 급여담당자가 등록한 기타소득 자료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 근로소득 확인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2. 정산공제자료 등록

1) (개인별)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종이없는 연말정산)



-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PDF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PDF 파일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PDF파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시 <u>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u>한다. ※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 가능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일괄내역 업로드에 업로드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내역 업로드도 가능하다. 업로드 시 기관 담당자가 의료비 등을 일별로 확인 가능
- 업로드 이후 각각의 탭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한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PDF로 업로드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일괄내역 업로드 PDF 파일은 반드시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은 파일만 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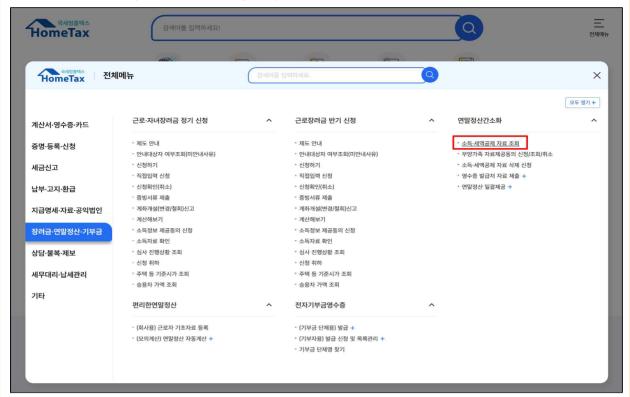
2) (급여 담당자)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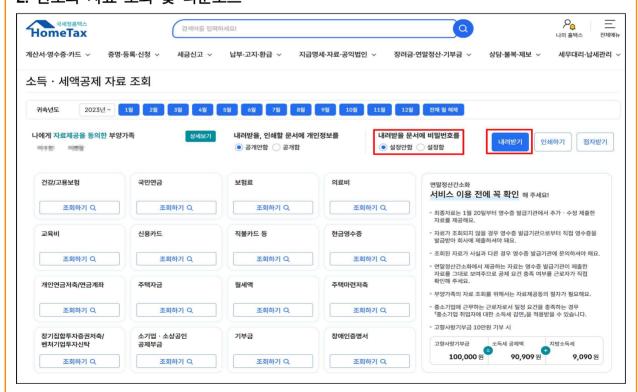
- 메뉴위치 : [연말정산-신고업무-연말정산 간소화 PDF관리]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대상 기관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국세청 PDF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 ※ 국세청 PDF 파일명의 이름, 생년월일 정보를 기준으로 나이스 연말정산 대상자 정보를 매칭하므로 "이름(생년월일)-2024년도자료.pdf"로 파일명 형식을 맞춰야 한다.
 - ※ 이름, 생년월일이 동일한 대상자는 개별로 등록해야 한다.
 - ※ 일괄등록 파일은 한번에 50개씩 기관별로 등록할 수 있다.
- 일괄업로드 대상자들은 PDF파일 반영시간과 함께 업로드 여부를 알 수 있다.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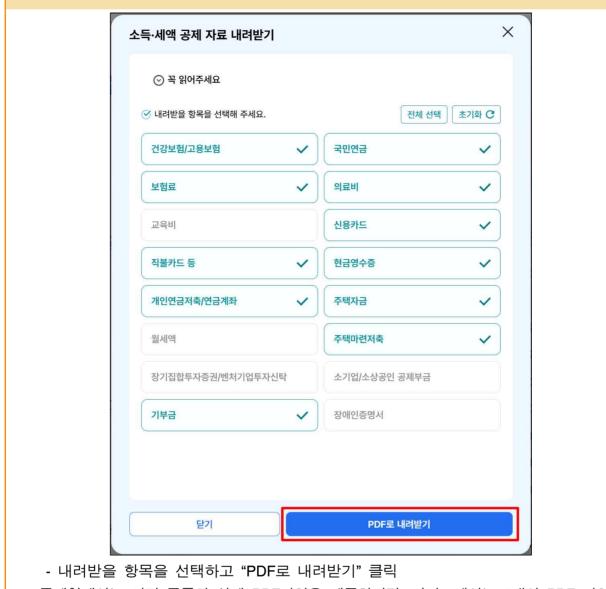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선택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내려받기" 클릭
-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스에서 PDF 업로드 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업로드 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세 PDF파일을 제공하지만, <u>나이스에서는 1개의 PDF 파일만</u> 업로드하면 처리된다.

3) 전자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 ①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24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기본사항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 국적 : 본인의 국적을 등록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팅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리스트에서 해당 국가를 찾아 등록한다.
 -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
 - <u>근무기간</u>: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24.01.01일이 종료일은 2024.12.31일이 반영된다. 연중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임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기타공제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공제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비과세총액 :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육아휴직수당) 포함



승인사형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0 0 **등** 등 축소 상신함 미래/현조호 *귀속연도 2024 Q 조회 기본사항 <mark>근무지실적</mark>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예결함 기결함 반려함 종전근무지실적 DEALTION 스톡옵션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급여초액 20,000,000 산여총액 1 000 000 기본 메뉴 급여촛액 + 상여촛액 + 스톡옵션행사이익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1,360,000 19,640,000 권한관리 사립학교 공무원연급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급여 연말정신 소득세 514.860 지방소득세 51,470 농특세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동의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외)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확인 현근무지실적 급여총액 78.132.670 2,973,980 나의 기부금명세서 비과세소등 13 930 000 급여초액 + 상여초액 + 스톡옵션행사이의 + 우리사주조한이충급 - 비과세소등 67,176,650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477,250 나의 위처지수연수증 소득세 6,369,240 지방소득세 615,120 농특세 -574,830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외) 200,000 정치자금기부금

④ 근무지실적탭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종전현근무지 소득 및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급여총액 : 2018년부터 그밖의비과세(육아휴직수당) 포함
- ⑤ 인적공제탭에서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 ⑥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 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 ⑦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 ⑧ 인적공제사항에는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항목이 표기된다.
 - ※ 상단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 하단에는 기타 금액을 입력한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 자녀세액, 출산· 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 해당 대상자가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아래의 팝업창이 표시된다.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이 표기된다.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 PDF에도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만, 나이스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된다.

※ 자녀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환급받고, 자녀장려금 수령 등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인적공제의 자녀세액 체크를 해제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수 있다.

승인사형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상 등 수 축소 상신함 미결/현조형 *귀속연도 2024 공람함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예결함 기견하 ※ (G)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탭]에서 입력하십시오 반려함 메시지항 특별공제(2024년) 기본 메뉴 거주자 (G)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축기과 귀하과리 2011년 이전 차인분 1514 0191 154-294 30년 이상 2011년 이전 차입분 급여 (15년이상) 연말정산 작기주택 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동의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충 근로소등화인 이자상환액 15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한 대출 2012년 이후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차입분 그반의 대축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 특례기부금 나의 원천징수영수증 2013년 이전 일반기부금 이월금(소득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0 2014년 이후 이월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⑨ 특별공제 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보급

- 주택자금

-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보급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차상환액(2011년 이전):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 공제 한도: 15년 미만(600만원), 15~29년(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기부금이월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이월금에 대하여 입력한다. ※ 이월금이 아닌 2024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 기부금 이월금 등록 방법

- 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리 목적으로 입력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 [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이월금을 등록 후 저장한다. 입력된 내용은 기부금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월금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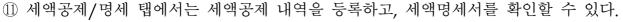
⑩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액이 표기된다.
- 소기업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마련저축 : 아래 저축별로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라 납입. 연 300만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 월 15만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입력하였지만 소득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투자조합출자 : 거주자/개인에 따라 2018년도 이후 출자·투자분이 표기된다.
 - ·10%에 입력 : <u>거주자</u>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총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 ※ 2022년부터는 3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에 표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 인적공제에 등록된 금액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조회 됨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적립식 펀드 납입 금액 입력(600만원 한도, 40%공제)





- 연금저축(F) 연금저축지급내역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이 표기됨
 -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표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E)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나누어 표기됨
 - ※ 2018년도부터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입력
 - ·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고으로 나누어 표기됨
- 기부금(H) 기부금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월세액(G) : 월세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조특법세액감면(제30조)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액 금액 표기
- 조세조약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조세 조약상 감면급여액 금액 표기
- 소득세법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 PDF상 해당 금액 표기

②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③ 결과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2) 의료비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계 금액을 기재, 의료증비코드 "1"로 함(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 안경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1인당 안경구입비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및 수정 필요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의료비 항목 작성 방법

- 의료비(난임시술비 등 포함) 관련 항목은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4. 기부금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기부금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탭]
-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 4)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 5)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기부금 항목 작성 방법

- 기부금(급여공제 기부금 포함) 관련 항목은 기부금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5. 연금저축공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 불입금액 중 일부만 공제받고자 할 경우 불입금액을 수정한 다음 저장한다.
 - * 2 H H G 2 T U G M E L M E 1 B H H H B M G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연금저축공제 항목 작성 방법

- 근로자퇴직연금, 개인연금, 청약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연금저축 관련 항목은 연금저축공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6. 월세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작성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작성한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2018년도부터 월세명세서 항목 작성 방법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임차금 관련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7.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 2)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내역을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다.



※ 20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항목 작성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일괄 등록됨
-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금액(1,000만원(1년 월세액 공제한도)-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
 - → 예)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 주택암치료가 860만원이고 월세명세서에 기등록한 월세액이 600만원일 경우월세액 공제한도 1000만원 기등록 월세액 600만원 = 400만원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400만원을 삭제하고 월세명세서에 400만원을 추가 등록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860만원 400만원 = 460만원만 작성 후 저장